

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

1. 제안이유

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9조의2제2호의 개정으로 「식품위생법」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고자 함.

2. 관계법령 :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

3. 주요골자

「식품위생법」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영업장 중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기준 마련 (안 제2조 제2호)

4. 검토의견

□ 본 조례 개정건은

- 「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」에 대한 감량의무조항이 폐기물 관리법시행규칙에 지난 2004. 8. 11부로 신설되고 2005. 12. 31부로 개정됨에 따라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장 등 음식물 쓰레기

다량 배출원에서의 재활용 및 자가처리 책무를 의무화 하도록 법정화 함으로써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을 촉진시키고 생활화하여 행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

- 감량의무사업장 범위를 음식점은 영업장면적이 125m² 이상인 음식점에서 165m² 이상인 음식점으로, 그리고 100인 이상 집단 급식소와 호텔업, 농수산물 도매 시장 등으로 확대 조정함으로써 주민들의 부담경감 및 형평성 유지와 능률성 확보에 크게 기여 한다고 판단되며
- 「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」 등 관련 법령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에 관한 위임규정이 명시 되어 있는 점을 감안 한다면
- 위 조례 개정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.

2006. 12. 22

도시전문위원 정 금 배